

고성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3호)

심사 보고서

1998. 6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6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6. 13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6. 19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군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기업경영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조성·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(안 제3조)

- 군의 출연금
-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- 기타수입금, 차입금, 용자상환금 등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
-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
-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다. 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5조)

- 조성된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함.

라. 용자금의 용도(안 제7조)

- 경영안정자금
- 기술개발자금
- 시설현대화 자금
- 유통업 현대화자금 등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제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였으나 위원들의 질의·토론결과 선거 등 시기적으로 다음 임시회로 보류토록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 상정된 안건이며
- 본 안건은 국가적 경기침체 해소와 중소기업의 도산예방 차원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되며
- 본 조례안 중 제3조 기금조성 재원확보에 있어 군비출연금 등 요구되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 고성군 기금(세원) 확보가 되어 있는지
● 답 : 없음
- 문 : 시장개발과 관련 군비 8억원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
● 답 : 시장개발(현대화) 4차사업 용자지원금은 국비 2,400백만원, 도비 800백만원, 군비 800백만원으로 국·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비 확보계획을 위해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.
- 문 : 시장개발(현대화사업) 1~3차까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4차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
● 답 : 도와 농협, 그리고 시장조합과 협의한바 자금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문 : 군비부담 8억원의 책정 동기는
● 답 : 중소기업 육성지침에 의거 국비 60%, 도비 20%, 군비 20%로 8억원은 비율에 의한 것임.
- 문 : 몇개월전에 완료시설 입주자로 부터 장사가 안되어 임대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4차 현대화 사업시 분양은 가능할 것인지, 그리고 시장조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, 군비 8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
● 답 : 시장조합에서 문제가 없다하므로 가능하다고 보며, 군비지원은 의무적 부담으로 보면 되겠음.

- 문 : 개인별 재산을 평가하면 몇백억 평가가 될 것으로 고성시장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이 본 견해는
- 답 :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음.
- 문 : 도조례 운영규칙상 불량거래업체로 지정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불량업체는 아닌지
- 답 : 불량업체는 아님.
- 문 : 4차사업에 있어 1,2,3차와의 사업비 차이가 많은데 사업비 책정기준이 없는지
- 답 : 4차사업은 설계에 의한 것임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